

(第12回一生活環境第4次)

<p>큰 不便을 끼쳐드리게 됐던 점에 대해서는 所管局長으로서 市民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 고 委員님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 리고,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指導監督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</p> <p>그러면 저희 產業經濟局에서 上程한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.</p> <p>먼저 서울特別市都・小賣振興審議委員會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입니다.</p> <p>本 條例는 都・小賣業振興法 第41條第2項 및 同法施行令 第34條第35條의 規定에 의해 서 서울特別市의 都・小賣業 振興과 調整에 관하여 市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해서 두는 서울特別市 都・小賣業振興審議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해서 必要한 事項을 정해 놓은 條例입니다.</p> <p>이 委員會 構成은 同條例 第3條에 委員長 1人을 포함해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하도록 되어 있는데 委員長은 副市長이 되고 委員은 당연직으로는 市政研究官과 產業經濟局長, 都市計劃局長, 住宅局長으로 되어 있고, 任期 2年인 위촉직으로는 서울特別市 商工會議所 事務局長, 또 都市計劃 및 建築 專門家, 流通產業 分야에 經驗과 學識이 풍부한 者로 構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게 된 이유는 서울市의 職制改正에 대해서 市政研究官의 職制가 政策企劃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.</p> <p>그래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當然職委員에 市政研究官을 政策企劃官으로 변경하고자 改正案을 上程했습니다.</p> <p>두번째로 이 事項은 서울市 條例 改正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내용으로서 委員님들께서 原案대로 通過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敏國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다음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專門委員 李贊穆 專門委員 李贊穆입니다.</p> <p>.....</p> <p>(報 告)</p>	<p>199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・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조례 종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.</p> <p>1. 제안이유</p> <p>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('93. 7.16.)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・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의 직명을 개정된 직제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>2. 주요골자</p> <p>동 개정조례안 제3조의 서울특별시 도・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에서 시정연구관을 “정책기획관”으로 직명을 개정하려는 것임.</p> <p>3. 관련근거 법령</p> <p>○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(대통령령 제13932호)</p> <p>4. 검토의견</p> <p>○본 건 개정조례안은 도・소매업 진흥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을 종전에 시정연구관의 직명을 정책기획관으로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직제상의 직명으로 개정하려는 것 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</p> <p>○그러나 동 개정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,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1994년 12월 1일 “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”(대통령령 14422호)개정에서 서울특별시 부시장을 국가공무원인 부시장과 지방공무원인 부시장으로 직명이 개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 위원장의 직명을 변경된 지휘・감독을 받는 부시장(지방공무원 부시장)으로 직명을 변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.</p> <p>.....</p> <p>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</p> <p>감사합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敏國 수고했습니다.</p> <p>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.</p> <p>다음은 質疑와 答辯時間이 되겠습니다. 本案件에 대해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</p>
--	--